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27호, 2022. 12. 1., 타법개정]

소방청(소방산업과), 044-205-7511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4. 8, 2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유도등"이란 화재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,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.
- 2. "피난구 유도등"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의 유도등을 말한다.
- 3. "통로유도등"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을 말한다.
- 4. "복도통로유도등"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거실통로유도등"이란 집무, 작업, 집회,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, 주차장등 개방된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계단통로유도등"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.
- 7. "객석유도등"이란 객석의 통로,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.
- 8. "광속표준전압"이란 비상전원으로 유도등을 켜는데 필요한 예비전원의 단자전압을 말한다.<개정 1914. 8. 21.>
- 9. "표시면"이란 유도등에 있어서 피난구나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부호등이 표시된 면을 말한다.
- 10. "조사면"이란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외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한다.
- 11. "방폭형"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 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 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.
- 12. "방수형"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.
- 13. "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"이란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과 피난목적이 아닌 안내표시면(이하 "안내표시면"이라 한다)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등을 말한다.
- 14. "단일표시형"이란 한가지 형상의 표시만으로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.<신설 2014. 5. 8.>
- 15. "동영상표시형"이란 동영상 형태로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.<신설 2014. 5. 8.>
- 16. "단일·동영상 연계표시형"이란 단일표시형과 동영상표시형의 두가지 방식을 연계하여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.<신설 2014. 5. 8.>
- 17. "투광식"이란 광원의 빛이 통과하는 투과면에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인쇄하는 방식을 말한다.<신설 2014. 5. 8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18. "패널식"이란 영상표시소자(LED, LCD 및 PDP 등)를 이용하여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.<신설 2014. 5. 8.>

제3조(일반구조) 유도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1. 상용전원전압(전지가 아닌 통상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을 말한다. 이하 각조는 같다)의 110 % 범위 안에서는 유도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.
- 2. 방폭형유도등의 방폭구조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3.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,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. 외함은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,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5. 외함의 표시면은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축전지등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, 보수, 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. 다만, 방수형, 방폭형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6. 유도등은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,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7. 사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.<개정 1910. 4. 29.>
- 8.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9.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10. 유도등은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예비전원과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1914. 8. 21.>
- 11.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12. 상용전원(전지가 아닌 통상사용하는 전원을 말한다. 이하 각조는 같다)과 접속되는 전원은 KS C IEC 60245-8 또는 KS C IEC 60227-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, 도전성 및 기계적강도가 있어야 한다.<개정 2010. 4. 29.>
- 13.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.75 ㎜이상, 인출선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.5 ㎜ 이상이어야 한다.
- 14.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으로부터 150 mm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15. 유도등에는 점멸,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- 16.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유도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.
- 17. <삭제>
- 18. 유도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바닥에 매립되는 복도통로유도등과 객석유 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9. <삭제>

- 20. 작동이 확실하고, 취급·점검이 쉬워야 하며, 현저한 잡음이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또한 먼지, 습기, 곤충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3. 12.>
- 21.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. 다만,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2.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,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,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,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23.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,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.
- 24.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5.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26.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7. 외부에는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.
- 28. 내부의 부품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9. 형광램프(냉음극형광램프를 제외한다)를 광원으로 하는 유도등의 교류전원에 의한 점등회로에는 KS규격표시품, 전기안전인증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30.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3. 12.>
 - 가. 유도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나. 인출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.
 - 다. 먼지, 수분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라.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, 리튬계 2차 축전지(이하 "축전지"라 한다) 또는 콘덴서(이하 "축전기"라 한다)이어야 한다.
 - 마.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바.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부품의 구조 및 기능)** 유도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 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.
 - 1. 스위치
 - 가.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,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.
 - 나.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%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(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)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다.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.
 - 라.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(수은스위치등)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 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표시등

- 가.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.
- 나. 전구는 2개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전자계전기

- 가. 접점은 G·S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.
- 나.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다.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
4. 퓨즈 등

- 가.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,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나.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. 다만,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'10. 4. 29 (단서신설)>
- 다.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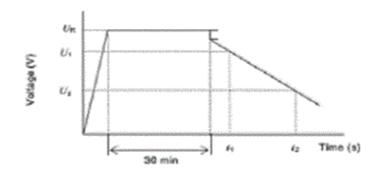
5. 변압기

- 가. 변압기는 KS C 6308(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나.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.
- 6.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7. <삭제>
- 8. 예비전원
 - 사. 예비전원을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(전압, 전류 등)이 균일한 예비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.<개정 1914, 8, 21,>
 - 아.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.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 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.0 V,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.75 V 상태를 말한다.
 - 자.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/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,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/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차.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-10±2 ℃ 및 50±2 ℃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/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,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-10±2 ℃ 및 50±2 ℃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/5C의 전류로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・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
- 카. 축전지의 안전장치시험은 1/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,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<개정 1914. 8. 21.>
- 타. 축전기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<신설 1914. 8. 21.>
- 파. 축전기는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후 그림 1과 같이 충·방전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 야 한다.<신설 1914. 8. 21.>
 - 1) 상온 (15 ℃ ~ 35 ℃) 에서 측정된 정전용량은 정격정전용량이상이어야 한다.
 - 2) 주위온도 (-25 ± 3) °C 및 (55 ± 2) °C에서 측정된 정전용량은 정격정전용량의 ± 30% 이내이어야 한다.



<급립1>

$$C^{see} \frac{I \times (T_2 - T_1)}{U_1 - U_2}$$

C (F) : 정전용량

UR (V) : 정격전압

U₁ (V): 0.8 × UR

U2 (V): 0.4 × UR

 $I(A) : 0.4 \times CUR \times 0.001$

제5조(전원) ① 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, 정전복귀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전환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
- ②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예비전원은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 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, 발광다이오드 또는 면광원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으로서 상용전원에 의하여 상시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1914. 8. 21.>
- ③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.

제6조 <삭 제>

제7조(외함의 재질) 유도등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
1. 외함이 금속인 것은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(스테인레스강 등)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2. 두께 3 mm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
- 3.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80±2 ℃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-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것

제8조(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등) ① 유도등에 사용되는 표시면과 조사면의 재질은 열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, 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. <2001. 9. 11.>

②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(계단통로유도등 제외)의 표시면의 크기와 휘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총	별	1대1 표시면 (23)	기타 표시면		평균취도(cd/m³)	
			짧은변(mm)	최소면적(㎡)	상용점등시	비상점등시
피난구 유도등	대 행	250이상	200이상	0.10	320이상 800미만	100이상
	중형	200이상	140이상	0.07	250이상 800미만	
	소 형	100이상	110이상	0.036	150이상 800미만	
통로 유도등	대형	400이상	200이상	0.16	500이상 1000미만	150이상
	중형	200이상	110이상	0.036	350이상 1000미만	
	소 형	130이상	85이상	0.022	300이상 1000미만	

<개정 1910. 4. 29.>

제9조(피난유도표시 방법 등) ①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 및 제5호에 적합하여야한다.<개정 2014. 5. 8.>

- 1.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하며, 이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 EXIT FIRE EXIT,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- 2. 비상문 문자로 하며 EXIT 등의 외국어 문자,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- 3.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에 비상문 등의 문자 조합으로 표시하며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- 4.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에 한국산업표준(KS) 기준의 인체 도안 조합으로 표시하며 비상문・EXIT・FIRE EXIT,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- 5. 피난유도표시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 - 가.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는 표시면 짧은 변의 길이(H)를 기준으로 좌우측 폭은 (23/100)H, 상부 폭은 (3/40)H로 표시할 것
 - 나. 인체 도안 및 화살표는 KS S ISO 3864-3을 적용할 것
 - 다. 비상문 문자의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에 2배 비율로 할 것
- ②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피난구유도등인 경우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,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통로유도등의 표시면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림문자와 함께 피난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표시면 이외의 유도등 전면에 표시면 광원의 점등 및 소등과 연동되는 별도 광원에 의한 피난방향 지시 화살표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시가 있는 복도통로유도등 표시면에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④ 피난구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구현방식이어야 한다.<신설 2014. 5. 8.>
 - 1. 단일표시형은 대기상태(상용전원이 인가된 경우에 화재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상태) 및 비상상태(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유도등의 전원이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상태)시에는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로 구현할 것
 - 2. 동영상표시형은 대기상태 및 비상상태시 모두 동영상으로 구현할 것. 이 경우 대기상태에서는 단일표시형으로 구현 할 수 있을 것
 - 3. 단일·동영상 연계표시형은 대기상태에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로 구현하고 비상상태에서는 동영상으로 구현할 것
-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동영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5. 8.>
 - 1.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되도록 하며, 이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 등의 문자,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 - 2. 1사이클은 3초 이내로 하며, 각 사이클별로 첫 영상은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에 의한 피난유도표 시를 1초 이상 유지할 것
 - 3. 제2호 1사이클의 첫 영상 이후 구현하는 동영상은 피난유도표시 그림문자를 3장 이상으로 구성할 것
- ⑥ 패널식 유도등은 대기상태시 상용전원에 의하여 피난유도표지를 구현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5. 8.>

제10조 <삭 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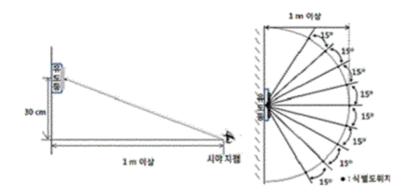
- 제11조(통로유도등의 구조) 통로유도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,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mm이상 돌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것은 표시면을 돌출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인 것
 - 2. 유도등 측면이 표시면의 세로길이 이상이고 폭이 10 mm이상인 조사면으로 이루어져 옆 방향에서도 조사면을 통하여 유도등의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실통로유도등

제12조(객석유도등의 구조) 객석유도등은 제3조의 관련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1. 바닥, 벽 또는 의자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바닥면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.
- 2. 객석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속에 장치하지 아니하고 겉에 장치할 수 있다.
- 제12조의2(바닥매립형 유도등의 정하중시험)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의 유도등은 유도등 상부 중앙 50 mm 직경의 원에 9800 N(1000 kg)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구조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.
- 제13조(살수 및 방수시험) ①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의 통로유도등은 유도등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.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(45 ± 2)°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고이지 않아야 하며,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4. 29.>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방수형유도등은 유도등을 맑은 물에 수심(물의 표면으로부터 유도등 윗지점 까지의 거리) 0.15 m로 30분간 침지시키는 방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절연저항시험)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,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의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ΜΩ이상이어야 한다.
- 제15조(절연내력시험) 유도등의 절연내력은 제14조에 규정된 시험부에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(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 kV,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kV를 더한 값)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.
- 제16조(식별도 및 시야각시험) ①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(평상사용 상태로 연결,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후 주위조도를 10 lx에서 30 lx까지의 범위내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경우에는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,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(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를 0 lx에서 1 lx까지의 범위내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(시력 1.0에서 1.2의 범위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. 이 경우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5. 8.>
 - 1.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,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도 쉽게 식별될 것
 - 2. 동영상표시형 유도등은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될 것
 - 3. 단일 동영상 연계표시형 유도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
- ② 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사용전원으로 등을 커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,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.
- ③ 피난구 유도등은 눈 높이로부터 30㎝ 위치에 설치하고 유도등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는 1 m 이상(표시면 긴 변의 길이 4배 이상으로 하고 이 거리가 1 m 미만인 경우에는 1 m로 한다) 떨어진 위치(그림에서 표시하는 위치)에서 제1항의 주위조도 및 시력범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5. 8.>
 - 1.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,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도 쉽게 식별될 것
 - 2. 동영상표시형 유도등은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할 수 있을 것
 - 3. 단일 동영상 연계표시형 유도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



- ④ 패널식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깜박임, 어두워짐 및 흔들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.<신설 2014. 5. 8.>
 - 제17조(소음시험)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(정격전압 ±20 %인 전압에서 실시한다) 또는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.1 m의 거리에서 40 dB 이하이어야 한다.
 - 제18조(자동전환장치등의 작동시험) 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1. 정격전압의 80 % 이하인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.
 - 2. 유도등에 정격전압 ±10 %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점멸기로 전환작동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는 시험에서 전환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제18조의2(저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) 유도등은 주위온도가 -10±2 ℃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5. 8.>
 - 1.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있는 유도등은 소등상태에서,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.
 - 2.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은 점등상태에서,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소등상태 없이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.
 - 제19조(충전장치)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의 제조업체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내에 예비전원의 정격용량이상으로 충전되어야 한다.<개정 1914. 8. 21.>
 - 1. <삭 제>
 - 2. <삭 제>
 - 3. <삭 제>
- ② <삭 제>

제20조 <삭 제>

제21조(광속표준전압 및 소비전력) 주위온도 20±5 °C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다음 즉시 48시간 충전한 후,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은 설계값(소비전력 표시값) 이하이어야 하며, 정격부하에서 유도등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유효점등시간을 방전한 직후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(설계치)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0. 4. 29.>

제22조 <삭 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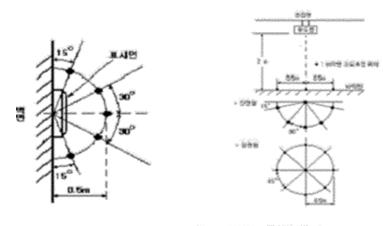
- 제23조(조도시험)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그 유도등은 비상전원의 성능에 따라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가 0 lx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, 그 조도는 각각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
 - 1.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2.5 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조도가 0.5 lx 이상이어야 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 m 높이에,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 m 높이에 설치하고 그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.5 m 떨어진 위치(그림1 또는 그림2에서 정하는 위치)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.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lx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 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lx 이상이어야 한다.

[그림 1] <복도통로유도등>

[그림 2] <거실통로유도등>



● : 조도 측정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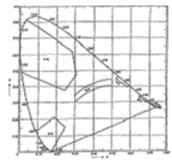
3. 객석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0.5 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.3 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.2 lx 이상이어야 한다.

제23조의2 <삭제>

제24조(반복시험) 유도등은 정격사용전압에서 AC점등, DC점등, 소등의 반복을 1회로 하여 2,500회의 작동을 반복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은 AC점등, DC점등 반복을 1회로 한다.<개정 2014. 5. 8.>

제24조의2(내식시험) 유도등의 외함 및 부품지지대로서 금속체인 것은 KS D 9502(염수분부시험방법)에 의하여 5싸이클(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,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)을 시험한 후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.

제24조의3(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) ① 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 그림문자 색상은 [그림]의 좌표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.



<개정 2014. 5. 8.>

- ② 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은 자외선 카본식 내후성시험기 온도를 (63 ± 3) ℃로 유지하여 120시간 조사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<신설 2014. 5. 8.>
- ③ 패널식 유도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(63 ± 3) ℃로 120시간 노출시킨 후 제1항의 시험에 적합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패널을 투과면으로 본다. 다만, 패널식의 표시면에 아크릴 등을 보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시험을 적용한다.<신설 2014. 5. 8.>

제24조의4(진동시험) 유도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5. 8.>

1. 주파수 범위: 10~150 Hz

2. 가속도 진폭 : 10 m/s²

3. 축수: 3

4. 스위프 속도 : 1 옥타브/min5. 스위프사이클 수 : 축당 20

제24조의5(충격시험) 유도등에 가하는 충격시험의 시험추 무게는 0.250±0.025 kg이고 지름 18.5±0.1 mm로 추의 한쪽 끝면은 표면이 폴리아미드 수지로 된 반지름 10 mm인 R100의 로크웰경도를 가진 반구형을 부착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한 자유 낙하시험을 유도등의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3회 실시하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착탈,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 5. 8.>

- 1. 바닥에 매립하는 유도등은 40 ㎝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할 것
- 2. 매립형 이외의 유도등은 표시면으로부터 20 cm 높이에서, 외함은 28 cm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할 것

제24조의6(전자파적합성) 유도등은 「전파법」제47조의3제1항 및 「전파법 시행령」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에 적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2.>

제25조(표시 및 취급설명서) ① 유도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.

- 1. 종별 및 형식
- 2. 형식승인번호
- 3. 제조연월, 제조번호
- 4.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
- 5. 유효점등시간
- 6. <삭제>
- 7.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예비전원의 종류, 정격용량 또는 정격정전용량, 정격전압<개정 1914. 8. 21.>
- 8. <삭제>
- 9. <삭제>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0. <삭제>
- 11. 그밖의 주의사항
- 12.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
- 13. <삭제>
- 14. <삭제>
- 15.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(보증기간, 보증내용, A/S방법, 자체검사필증등)
- 16. 소비전력<신설 2010. 4. 29.>
- ② 유도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의 소방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제품의 특징
 - 2. 설치방법
 - 3. 점검요령
 - 4. 배선도 및 결선도
 - 5. 사용상의 주의
 - 6. 그밖의 필요사항
- ③ 유도등에는 다음 각호의 부속품등이 구비되어야 한다.
 - 1. 예비전구(백열전구용에 한한다)
 - 2. 예비퓨즈

제26조(세부규정)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.

제27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1. 15., 2018. 3. 12., 2019. 1. 31.>

제28조

부칙 <제2022-27호,2022.12.1.>

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